

- 모든 증빙 서류의 영문화 필수
미국 세관에 검증자료를 제출할 때는 관련된 모든 서류를 영어로 번역 후 제출해야 함
Miami 세관에 제출된 증빙 서류 중 한글이 사용된 ERP 캡처화면을 증빙 서류로 제시하여 모든 증빙 서류의 영문화 작업 실시한 후 제출함



원산지관리사로 블루오션을 향해하다!

Boston 세관 제출 자료

결정 내용(CBP Form 29)
• CBP Form 28에 대한 제출자료에 대해 Boston 세관으로부터 이래와 같은 답변(한국어)
인정을 받음
• 검증 결과, 역내산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한~미 FTA 협정에 따라 협정판세 적용이 가능한 물품임

Miami 세관 제출 자료

향후 업체 대응 방안

이의신청(Protest) 준비

- 미 Miami 세관의 "Negative(한국산 불인정)" 회신(CBP Form 29)에 대해 이의제기 (Protest)를 준비 중에 있음

FTA 원산지 시스템 구축

- 내부 ERP 시스템의 "Tracking Number"를 통한 원산지 관리를 넘어 FTA 원산지 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임

출처였던 준비기간

전라남도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실시하였던 원산지관리사 양성교육 수강을 통해 원산지관리사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FTA 체결로 인해 관세혜택을 볼 수 있지만, 협정별·상품별로 상이한 원산지결정기준이 적용하기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FTA 전문기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 역할을 바로 원산지 관리사가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FTA 전문가가 되어 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원산지관리사를 공부하다보니 원산지관리사 각 과목들을 공부하면서 점차 전문가가 되어간다는 생각에 즐겁게 공부 할 수 있었습니다.

원산지관리사로 취업성공!

원산지관리사를 취득하고 4학년 2학기 재학 중 전라남도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의 FTA 활용 지원센터 직원 채용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전라남도 중소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원산지관리사 양성교육을 수강하여 원산지관리사를 취득하게 되었고, 전라남도 기업들의 FTA 활용을 지원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면 꿈꾸고 있던 "전라남도 무역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지원하게 되었고, 원산지관리사 자격증 보유로 높은 기산점을 받아 취업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전라남도 FTA 활용 증대에 온 힘을…

현재 전라남도 중소기업지원센터의 FTA 활용지원센터에 근무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으며, 센터에 파견된 관제사님들과 FTA 협정방문 컨설팅을 다니면서, 전라남도의 상황을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기업들의 FTA 활용도를 높여 그동안 침체되어 있던 전라남도의 경쟁력을 키워나가며 무역이 강한 전라남도를 만들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FTA 시대를 헝하하기 위한 나침반, 원산지관리사

벌써 원산지관리사로서 1년 가까이 보냈습니다. 앞으로 더 배워야 할 부분이 많지만, 그동안 원산지관리사로서 각종 FTA 관련 교육·설명회 기획, 전라남도 기업들의 BOM 부터 원산지소명서, 원산지증명서 등의 작성, 사후검증에 대한 대응 준비 등을 도움으로써 전라남도 지역의 FTA 활용 증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단순 FTA 활용측면뿐만 아니라 FTA 활용을 통한 해외시장개척을 증대시키고 싶습니다. 전라남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넥스트레카'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FTA를 활용하면 좋은 품질의 제품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해외시장에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원산지관리사로서 전라남도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꿈을 키우고 있지만, 원산지관리사로서의 업무영역이 다양한 분야가 존재하오니 여러분께서도 원산지관리사를 통해 꿈을 키워가는 것이 어떨까요?

고용노동부 전문인력채용 지원사업

원산지관리사 자격은 2012년 12월 관세청으로부터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승격되었으며, 2013년부터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자격으로 지정되었다. 고용노동부 '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이란 좋은 인건비 부담으로 전문인력 채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운영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 업종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제외한 근로자수 500명 이하 제조업과 근로자수 규모에 따른 서비스업이다.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① 근로자수 500명 이하 제조업
- ② 근로자수 300명 이하의 광업, 운수업, 출판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③ 근로자수 200명 이하의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④ 근로자수 100명 이하의 그밖의 업종 등

* 다만 부동산업, 일반유통 주점업, 무도유통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캠핑 및 베일업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은 제외

사로 고용 또는 사용된 전문인력이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1년의 기간 내에서 4번에 걸쳐 각각 270만원씩, 최대 1,080만원의 지원이 가능하다. 동일사업주에 대하여 3명까지 지원하며, 50세 이상인 전문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지원받아 사용할 경우에는 4명을 한도로 지원된다. 본 사업은 고용창출지원사업 공고, 사업계획서 제출, 심사 및 승인, 사업 실시 및 원산지관리사 채용에 관심이 있는 기업은 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의 지원대상여부 확인, 사업주진일정, 사업계획서 준비, 지원금 신청, 지도·점검 내용 등을 꼼꼼이챙겨 전문인력 확보와 정부 지원금 혜택이라는 1석2조 효과를 기대해보는 것도 좋다.

관련 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is.go.kr>) 알림마당 게시판 고용 창출 지원 사업 시행공고 및 세부 시행 지침을 참고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해외입기공 감면대상 제외비용 물품 취급 수수료 등 거래제반비용의 FTA 활용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김덕현 연구원 국제일자리정보원

이때, 해외입기공물품이 세액 감면을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의 두 가지로 첫째, 원재료 또는 부분 물품을 수출하여 제85류, 제90류 또는 제9006호에 해당되는 물품으로 제조·가공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와 둘째, 제조·기공 및 수리를 위하여 수출된 물품으로서 제조·기공 및 수리 후 수입된 물품과 HS 10단위가 일치하는 경우이다.

단, 해외입기공물품 등의 감면 범위는 수출된 원재료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해외입기공을 위해 발생하는 임기공료와 항복 운임 및 보험료는 해당 원재료와는 별개로 관세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즉, 전체 재수입 물품에 대한 100% 감면의 의미는 아니며, 관세법 101조의 조건에 충족되는 경우, 해당 원재료에 대하여만 감면을 해 주는 제도인 것이다. 그렇다면, 임기공로, 물품 취급 수수료, 항복운임 등 거래제반비용까지 세액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FTA를 활용해보도록 하자. 만약 해외입기공업체(수탁기공업체)가 우리나라에 정하는 때에 수출 원재료에 해당하는 관세를 감면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해외입기공품의 FTA 활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관세의 감면이란, 수입물품 또는 수입자에게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관세를 감면해 주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넘부여해야 하는 관세를 줄여주거나, 이에 대체해주는 제도들을 통하여 관세의 감면제도라 한다.

와 FTA를 체결한 국가에 소재하거나, 임기공물품이 협정에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음으로써 해외입기공품에 대한 감면보다 더 큰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임기공물품이 원산지으로 인정받을 경우 수출 원재료에 대한 관세는 물론 임기공로와 항복 운임·보험료에 대한 세액 역시 면제받을 수 있다. 것이다.

또한 해외입기공물품 등에 대해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임기공계약서 및 수출원재료가 활용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소요량, 진량관리 등 복잡한 행정절차가 수반되지만 FTA를 활용하게 되면 예비산을 입증할 비교적 간단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함으로서 특허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기가 수월하다. 단, 반드시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어 한다는 점은 기억해야 한다.

두 제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해외입기공 물품 등 감면		FTA 특혜세율
적용 대상 물품	제85류, 제90류 또는 제9006호에 해당되는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기공한 후 수입하는 경우 또는 기회제작부령이 정하는 물품으로 HS10단위가 일치하는 물품	제한 없음
특혜 범위	수출된 원재료의 가치에 대해서만 100% 면제	체불 스페셜에 따라 0%~100%
제출 서류	임기공계약서, 수출원재료와 수입물품 HS 10단위가 일치함을 입증하는 자료 등	(EU의 경우 원산지인증수출서)
적용 시점	수입신고 수리 전	수입신고 수리 전 (수입신고일로부터 1년간 소급 가능)
적용 범위(국?)	어느 국가나 적용 가능	FTA 체결국에 한정

